# 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① 평택시장인 피고인 1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②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업적을 선거구민인 평택시민에게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선거일 전 60일 이후 행사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②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7317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피고인 1은 현재 평택시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고, 피고인 2는 제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1을 보좌하며 대외홍보, 선거전략수 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고인 1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로 재출마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여 왔고 평택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고인 1
  의 평택시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됨¹)

####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의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 피고인 1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57일 전 평택역 광장 아 케이드 상가 해제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 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들의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업적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평택시장으로서 약 7,000명의 선거구 민들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평택 역 광장 아케이드 해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업적을 선거구민인 평택시민에게 홍보하였음

##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들 전부 무죄
- 원심: 제1심판결 파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피고인 1. 2: 각 벌금 80만 원
  - 원심의 유·무죄 판단 이유
  - 피고인 1의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여 평택시장인 피고인 1이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허용됨
  - 피고인들의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업적홍보로 인한

<sup>1)</sup>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 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했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 유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3일 남겨 둔 시점에 피고인 1이 평택시장으로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이행협약을 체결하거나 해체공사 착공식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것은 피고인 1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함

•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함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평택시장인 피고인 1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무죄판단 부분)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유죄판단 부분)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 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4. 피고인 1의 지위

■ 벌금 8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평택시장 직을 유지함?)

<sup>2)</sup>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좌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좌를 범함으로 인하여 장 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